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경 상 남 도

- 목 차 -

<도민생활(2)>

- 01. 창원시 의창구청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07
- 02. 공금증 문자로 한번에 해결, 경남 120 민원콜센터08

<기업/창업(09)>

- 01. 경남형 팁스11
- 02. 경남 창업 수도권 거점 운영12
- 03. 경남 동부권 창업아카데미 운영13
- 04. 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 지원14
- 05. 점프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15
- 06. 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16
- 07.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 지원 확대17
- 08. 경남기업119 플랫폼 운영18
- 09. 대리점 공급업자 과태료 부과 처분20

<사회복지/보건(18)>

- 01.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23
- 02. 중장년 대상 반려로봇 설치 지원24
- 03. 주거환경 취약계층 집정리 찾아가는 '클린버스'25
- 04.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정리 사업26
- 05. 중장년·가족돌봄청년대상 일상돌봄서비스 확대27
- 06.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28
- 07.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9
- 08.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더하기) 사업30

09.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31
1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인상	32
11. 요양보호사교육원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및 교육시간 확대 ...	33
12.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휠체어리프트 버스) 운영	34
13.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지원	35
14.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36
15. 경상남도 동부권 정신응급 위기개입팀 신설	37
16. 식품업계 종사자 건강진단 제도 개정	38
17. 비대면 진료사업 확대 시행	39
18.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40

〈여성/가족/보육(13)〉

01.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확대	43
0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44
0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45
0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46
05.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47
06. 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48
07.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9
08.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0
09.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소득기준 폐지)	51
10. 임신 준비중 부부 필수가임력 검진비 지원	52
11.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53
12. 만4~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54
13.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사업 확대	55

〈주거/교통/안전(14)〉

01.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9
02.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60
03.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	63
04.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안내	65
05.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68
06.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69
07. 시설물유지관리업 종료 및 폐지	70
08.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71
09.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72
10.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 변경	73
11. 위험물 예방규정계획서 이행실태 평가	74
12. 대형공사장 합동현장자문단 운영	75
13. 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사전안내 서비스 개선	76
14. 별집 사전제거 신고제	77

〈농림/수산/축산(13)〉

01. 경남 청년농업인 연령 '45세→50세 미만' 확대	81
02.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지원	82
03. 시설원에 토양개량제(바이오차) 지원	83
04.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84
05.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 및 시행	85
06.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86
07.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	87
08.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88

09.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	89
10. 경남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추진	90
11. 어구 보증금제	91
12. 소외도서 향로 운영	92
13.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93

〈문화/체육/환경(12)〉

01.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97
02.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98
03. 문화콘텐츠 해외마켓 참가 지원	99
04. 문화콘텐츠 분야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100
05.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101
06.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102
07.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근무자 교육 강화	103
08. 순환경제사회법 전면 시행	104
09.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강화	105
10. 대기 4·5종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106
1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승인신청 기준 완화	107
12. 임업직불제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08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도민생활

창원시 의창구청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

경상남도 | 도민봉사과(☎055-211-7751/7770)

2024. 1. 29.부터는 창원시 의창구청에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인한 여권민원을 분산하여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

주요내용

- (대행기관) 신규 창원시 의창구청, '24. 1. 29.(월)~
- (수행장소) 의창구청 1층 민원실

구 분	종 전	개 선
도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22개소(도/시군별 1개소) (단, 창원시·김해시·양산시 2개소)	23개소(도/시군별 1개소) (단, 창원시 3개소 /김해시·양산시 2개소)
운영업무	여권 접수 및 교부 등	좌 동

* '23. 12월 현재 전국 254개소, 도내 22개소 운영 중

시행일

2024년 1월 29일

궁금증 문자로 한번에 해결, 경남 120 민원콜센터

경상남도 | 도민봉사과(☎055-211-3681)

2024년부터 문자로도 경남 120민원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추진배경

- 유선통화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경남 민원콜센터에 실시간 문자 채팅 상담채널을 추가하여 변화하는 의사소통 수요에 대응

주요내용

종 전	개 선
055-120 전화상담	055-120 전화 · 문자 상담

- (이용방법) 055-120번 하나로 전화와 문자채팅 상담서비스 제공
※ 별도 설치없이 스마트폰에서 055-120번으로 문자(SMS)로 문의 ↔ 답변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18시 이후, 공휴일 재난상황실 연결)
- (주요상담) 민원, 일자리, 청년, 보건, 복지 등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기업/창업

경남형 팁스

경상남도 | 창업지원단(☎055-211-2603)

민간의 자금 및 육성 프로그램 연계와 사업화자금 지원으로 도내
기술력있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추진배경

- 경남의 제조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창업을 고도화하고 민간투자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도모

주요내용

- 사업예산 : 30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도내 본사를 두거나 이전 예정인 7년 미만 창업기업 2개사
(※ 초격차 분야 10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내용
 - ▶ 도내 창업기업에 투자 및 육성 가능한 민간운용사 선정
 - ▶ 경남형 팁스 운용사가 투자 후 선정된 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 액셀러레이팅, 보육지원 및 연계 투자 지원 등
- 향후일정
 - ▶ ('23.2~3월) 경남형 팁스 운용사 모집
 - ▶ ('23. 3월~) 경남형 팁스 추천기업 선정 및 사업화 지원

시행일

24년 2월

참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6조

경남 창업 수도권 거점 운영

경상남도 | 창업지원단 ☎055-211-2604

수도권 투자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 도내 창업기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투자자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네트워킹·투자상담 거점 마련

주요내용 [경남창업포털 누리집 www.gnstartup.kr]

【 도내 창업기업을 위한 “수도권” 투자유치 거점 센터 운영 】

- ▶ (센터명) G-Space@TIPS(경남 창업 수도권 거점센터)
- ▶ (센터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로 175
- ▶ (지원대상) 경상도 내 창업/중소/벤처기업
- ▶ (모집시기) **6개월마다 참여기업 상시모집 중, 매월 별도 기업설명회 진행**
- ▶ (지원내용) 대형 투자자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 거점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
 - ① IR프로그램 단계별·분야별 특화 IR 개최, 창업기업-투자자 네트워킹 등
 - ② 상담/멘토링 기업 맞춤형 1:1 투자상담 및 멘토링, 특강, 성공기업 탐방 등
 - ③ **경남 소재 기업 비즈니스 공간 제공 등**(선정기업 외에도 누구나 이용가능)
-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업 지원

시행일

2023년 2월

참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6조

경남 동부권 창업아카데미 운영

경상남도 | 창업지원단(☎055-211-2573)

창업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지역창업자의 정착을 유도하여 경남 동부권역 창업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추진배경

- 경남 동부권 창업거점 조성으로 창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창업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

주요내용 [경남창업포털 누리집 www.gnstartup.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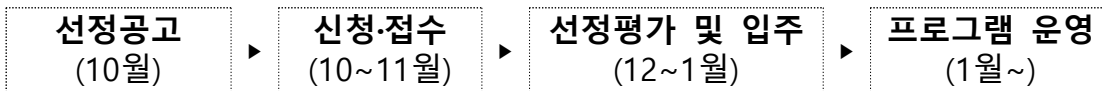
【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 거점센터 운영】

- ▶ (센터 명) G스페이스 동부(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6)
- ▶ (지원대상) 도내 창업기업
- ▶ (주요시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디지털 스퀘어, 기업보육실, 세미나실, 영상 회의실, 휴게실 등
- ▶ (지원내용) **지원 프로그램 상세내용은 '24년 2월 공고 예정**
 - 1 경남 동부지역 창업문화 및 창업 네트워크 확산 프로그램 운영
 - 2 민간협업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3 창업아카데미 입주기업 선발 및 보육

Ⅱ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진일정 Ⅱ



Ⅱ 센터입주기업 선정 일정 Ⅱ



시행일

2024년 2월(예정)

참고 | 「경상남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6조

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 지원

경상남도 | 기업정책과(☎055-211-3363)

도내 30년 이상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인증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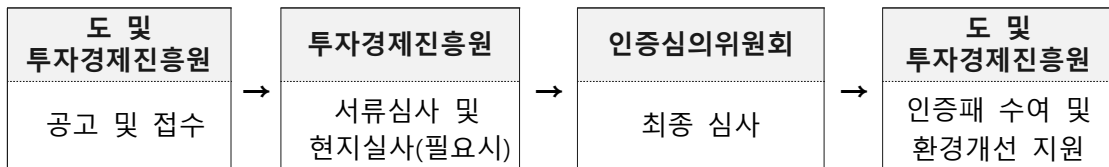
-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7.6.)에 따라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는 도내 장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24년 신규사업

- 인증규모 : 도내 모범장수기업 5개사 내외
 - ※ (모범장수기업) 경상남도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 모범장수기업 인증패 수여
- ▶ 기업지원사업 선정 우대
- ▶ 안전디자인 등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기업당 최대 15백만원)

【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시행일

2024년 1월

참고 | 경상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점프업 기업 육성 지원 사업

경상남도 | 기업정책과(☎055-211-3374)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남의 비제조 산업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청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이 원하는 비제조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해당 분야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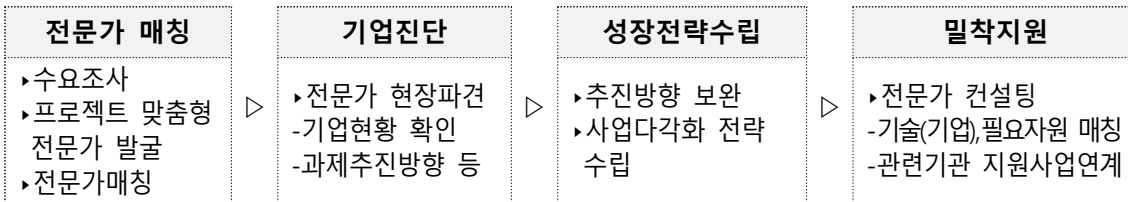
주요내용 '24년 신규사업

- (지원내용) 비제조분야 기업의 성장전략 컨설팅, 교육, 사업화 지원, 마케팅 활동, 디자인, R&D 등 지원
- (사업대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종사자수 10인 이상 비제조산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 10개사

※ (비제조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상 C10~34, 제조업 외 산업 중 정보통신업(J58~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90~91)

- (지원규모) 업체당 2년간 최대 1억원

【 추진절차 】



시행일

2024년 1월

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

경상남도 | 기업정책과(☎055-211-3374)

도내 우수 비제조 기업의 발굴을 위하여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마케팅 인력 확보의 열악함, 판로 확보의 애로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도내 비제조분야 기업의 홍보·마케팅 지원의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24년 신규사업

- (지원내용)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 개척, 지식재산권 창출, 디자인, 국내외 인증 획득 등 지원
- (사업대상) 비제조산업 분야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유망 중소 기업 5개사

※ (비제조산업) 표준산업분류코드상 C10~34, 제조업 외 산업 중 정보통신업(J58~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90~91)

- (지원규모) 업체당 20백만원 지원

【 추진절차 】

전문가 매칭	기업진단	중간점검	밀착지원
▶ 수요조사 ▶ 기업애로 맞춤형 전문가 발굴 ▶ 전문가매칭	▶ 전문가 현장파견 - 기업현황 확인	▶ 사업수행 진도점검 - 기업별 애로 해소 지원 및 진도점검	▶ 전문가 컨설팅 - 기술(기업), 필요자원 매칭 - 관련기관 지원사업 연계

시행일

2024년 1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 지원 확대

경상남도 | 기업정책과(☎055-211-3373)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사업,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기업에 수혜 기회를 높이고 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자금이 일부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혜택을 골고루 확산
- 경남의 주력 제조업황 개선을 위한 신속한 설비투자 지원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① 자금 중복지원 제한으로 경쟁 완화

-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 경남도 정책자금 3회 이상 대출승인을 받은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

② 미수혜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

- ▶ 최근 4년간 미수혜 기업 대상 1,000억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배정

③ 특별자금의 시설자금에 공장 매입용도 허용

- ▶ 항공·방산 등 업종의 신속한 시설 투자를 위해 본사가 도내에 있는 기업이 도내 공장 매입을 허용

④ 건설업종 지원 분야 확대

- ▶ 제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 (기존) 8종 → (개선) 10종 확대
※ (추가 2종) 철강구조물(42131), 금속구조물(42492) 업종

⑤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기업으로 ESG경영 참여기업, 모범장수기업,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기업 3종 추가

시행일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일부터

참고 |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남기업119 플랫폼 운영

경상남도 | 기업정책과(☎055-211-3383)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상도 및 중앙정부의 기업지원사업을 통합안내하기 위하여 경남기업 119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추진배경

- 부서별로 건의되는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요구 창구 일원화
- 자금, 수출, 창업, 인력, 투자 등 부서별·기관별 분산된 기업지원 정보를 기업 수요에 맞는 정보제공 필요

주요내용

[경남기업119 누리집, <https://www.gyeongnam.go.kr/giup>]

- ① 경상도 및 시군 및 중앙정부 기업지원사업 통합 안내
 - ▶ 분야별·기관별 검색 기능, 접수기간·지원개요 등 안내
 - ▶ 도 지원사업 접수일정 연간 캘린더 제공 및 엑셀다운로드
- ② 기업 알림톡 제공(관심분야, 관심 시군별)
- ③ 기업애로 및 방문신청 처리과정 공개
- ④ 기업지원시책 책자파일 게시(도, 시군, 중기부, 경남TP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

시행일

2024년 1월

PC 접속방법

1 경남기업119 접속



2 경상남도청 접속(2가지 방법)



MOBILE 접속방법



대리점 공급업자 과태료 부과 처분 권한 위임

경상남도 | 소상공인정책과(☎055-211-7979)

2024.1.1.부터 대리점 공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로 위임됩니다.

추진배경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권한의 위임)의 시행('24.1.1.~)에 따라 대리점 공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로 위임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공정거래위원회	공급업자의 본사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과태료 부과대상)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서 서면 제공 의무, 서명·날인 의무, 보관의무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① 공급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리점거래 계약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거래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1,250 만원	2,500 만원	5,000 만원
② 공급업자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25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 과태료 부과절차 】

신고 → 법위반사실 검토 → 사전통지·의견제출(20일 이상) → 청문·의견진술(감경) → 부과처분 → 이의신청(90일 이내)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 사회/복지/보건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055-211-4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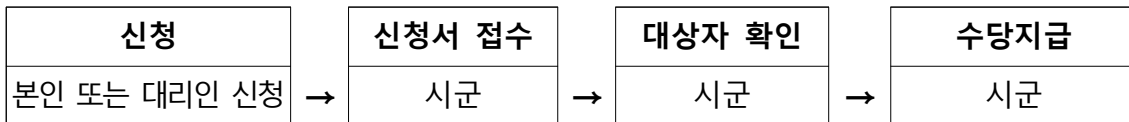
원폭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원폭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보조수당 지원

주요내용 '24년 신규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 지원대상 : 원폭피해자 1세대
- 지원내용 : 생활보조수당 1인당 월 5만원 지원
- 지원체계



시행일

2024년 1월(예정)

참고 |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5조의9

중장년 대상 반려로봇 설치 지원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055-211-4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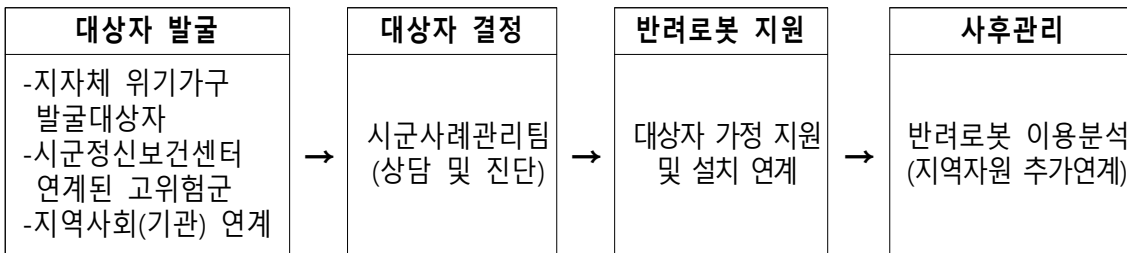
반려로봇 지원으로 24시간 비대면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중장년 층의 고독사를 예방합니다.

추진배경

-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복지사각지대 중장년 대상 돌봄사업 필요성 증대
- 비대면 돌봄을 통한 정서적 지원과 위급 시 119연계로 응급구조 지원체계 마련 필요

주요내용 '24년 신규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 사업위치 : 도내 15개 시군 ※ 창원, 김해, 함안 제외(자체 유사사업 추진)
- 사업대상 : 도내 고독사 위험 중장년(만40세 ~ 만64세) 210명
- 사업내용 : 반려로봇 지원으로 비대면돌봄 및 위급 시 응급구조지원, 2년간 이용료 무료 → 2년 후 월 1만원 내외 본인부담금 발생
- 추진체계



시행일

2024년 3월

참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 취약계층 집정리 찾아가는 '클린버스'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055-211-4823)

악취 및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주거환경취약계층을 위한 집정리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추진배경

- 주거환경 취약계층의 저장강박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도움 필요성 증대
- 경남형 통합돌봄사업과 연계추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지원과 이웃의 불편 해소

주요내용 '24년 신규사업

- 사업위치 : 도내 7개 시군(사천, 김해, 의령, 함안, 창녕, 하동, 거창)
※ 경남형 희망나눔통합돌봄 시범사업 참여 시군
- 사업대상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100가구
- 사업내용 : 주거공간 청소(정리수납), 소규모 수선, 방역·폐기물 처리, 사후관리를 통해 상담 등 필요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
- 사업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창구 신청

시행일

2024년 2월

참고 | 「경상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정리 사업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114)

도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명보호와 주거안전 도모를 위하여
집 정리 및 수납, 상담·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저장강박 등에 따른 물건 수집, 적치로 인한 장애인 화재 사망 사건 발생(23.4월)
-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생명·안전 보호 장치 마련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및 유관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

주요내용 '24년 신규사업

- 사업위치 : 도내 전 시군
- 사업대상
 - ① 도내 등록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
 - ②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구성원으로서 실 거주하는 가구(시범 50가구 선정)
- 사업내용 : 정리수납·청소, 방역·폐기물 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지원
- 추진체계



시행일

2024년 1월

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6)
경상남도	복지정책과(☎055-211-4825)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의 일상 회복 지원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추진배경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돌봄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하여 일상으로의 회복 지원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누구나	(추가) 가족돌봄청년 누구나
수행지역	창원시, 김해시	도내 전 시군
제공 서비스	재가돌봄, 가사지원, 동행지원, 심리상담	(추가) 시군별 특색에 맞는 자체 특화서비스 제공 예정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개요 】

- ①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 선정 후 바우처카드 발급
- ② (선정기준) 소득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③ (이용기간) 1회 선정 시 6개월 ▶ 재판정 여부에 따라 최대 24개월 이용 가능
- ④ (이용방법)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제공기관 이용 ▶ 바우처 결제

시행일

2024년 3월(예정)

참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경상남도	복지정책과(☎055-211-4835)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합니다.

추진배경

-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

주요내용

①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액 인상

- 4인 가구 기준 '23년 대비 '24년 생계급여 21만 3천원(13.16%) 인상

2023년		→	2024년	
선정기준	지원액		선정기준	지원액
생계급여 (중위소득의30%)	162만289		생계급여 (중위소득의32%)	183만3,572원
의료급여 (중위소득의40%)	216만386		의료급여 (중위소득의40%)	229만1,965원
주거급여 (중위소득의47%)	253만8,453		주거급여 (중위소득의48%)	275만358원
교육급여 (중위소득의50%)	270만482		교육급여 (중위소득의50%)	286만4,956원

② 2024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인상

- 4인 가구 기준 '23년 대비 '24년 중위소득금액 6.09% 인상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	'23년	207만7,892원	345만6,155원	443만4,816원	540만964원
	'24년	222만8,445원	368만2,609원	471만4,657원	572만9,913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4)
경상남도	복지정책과(☎055-211-4836)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추진배경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대상자 확대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단,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의료급여사업 】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사업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더하기)} 사업

경상남도 | 노인복지과(☎055-211-4864)

홀로어르신들의 대형빨래 무료세탁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홀로어르신들의 대형빨래 어려움에 따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현장중심 복지서비스 지원

주요내용

- ① 대상지역 확대
 - 도내 전 지역 6개 권역 → 7개 권역 확대운영
- ② 연계서비스 추가 제공
 - 치매예방교육, 디지털 교육, 건강체조 등 연계서비스 추가 제공

【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

- 지원대상 : 도내 홀로어르신
- 수행기관 : 경남광역자활센터
- 신청/접수 : 매월 1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경상남도 노인복지과(☎055-211-4873)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80세 미만 도내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주요내용

-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액을 '24.1.1.부터 월 2만원 인상

총 전	개 정
월 7만원	월 9만원

Ⅱ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Ⅱ

- 지원대상 : 11,930명(도내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월지급액 : 80세 미만 월 9만원, 80세 이상 월 12만원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인상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
경상남도	노인복지과(☎055-211-4893)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를 인상합니다.

추진배경

- 어르신이 일자리를 가지고 직접 사회활동을 하면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공익활동형	월 27만원 지원	월 29만원 지원
사회서비스형	월 59.4만원 지원	월 63.4만원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일자리 유형 및 단가 】

유형	대상	활동시간(월)	활동비(월)	비고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0시간	29만원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60시간	63.4만원	
시장형	만 60세 이상	근로계약에 따름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노인복지법」 제23조

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시간 확대 및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9)
경상남도	노인복지과(☎055-211-4894)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하여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운영내실화 및 전문적·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전문적 요양보호사 양성

주요내용

구 분		총 전	변 경
교육 시간 확대	신규자	240시간	320시간
	경력자	160시간	223시간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40~50시간	좌 동
출결시스템		수기출석부	비콘 및 생체인식가능 전자출결시스템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휠체어리프트 버스) 운영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113)
수행기관	서진항공여행사(☎055-299-1234)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하여 신형 휠체어리프트 관광버스를 도입하여 단체관광 이용료 할인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여가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TV 및 인터넷 시청이 89%인 반면 여행은 5.9%에 불과함.
- 휠체어리프트 장치를 장착하고 관광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23) 관광버스 구입 ▶ ('24) 휠체어리프트 부착 및 장애인 관광혜택 제공

종 전	개 정
장애인 관광 할인 없음	장애인 관광 할인 혜택 무장애 관광코스 제공

II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운영사업 II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버스탑승 시 수월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① 버스 내 리프트 장치를 장착하고, ② 단체관광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후 ③ 장애인 단체여행/수련회/워크숍 등의 형태로 이용가능하며, ④ 무장애 관광코스도 제공할 계획임.

시행일

2024년 3월

참고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0)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134)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원금액이 월 40.3만원에서 41.4만원으로 3.3% 인상됩니다.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인연금 인상과 장애수당을 통해 소득 지원 강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장애인연금 월 40.3만원	장애인연금 월 41.4만원

Ⅱ 지원대상 Ⅱ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기초·차상위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
 - ▶ 장애수당(재가) 월 6만원, 장애수당(시설) 월 3만원 변동없음.

시행일

2024년 1월

참고 | 「장애인연금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8)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055-211-5143)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대일 돌봄지원체계 구축으로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장애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공적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가족의 돌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

주요내용 '24년 신규사업

① 24시간 개별지원(1:1)

- ▶ 장애인복지과, 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한 주간활동,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등 24시간 지원(낮 활동 + 주거지원·야간활동)

② 주간개별지원(1:1)

- ▶ 장애인복지관 등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이용자 1명당 종사자 1명)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③ 주간그룹형지원(1:1)

- ▶ 발달장애인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중 일상생활·의사소통의 어려움, 도전적 행동 등의 기능제한이 있고, 환경·중복장애 등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최중증 장애인

시행일

2024년 6월(예정)

참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경상남도 동부권 정신응급 위기개입팀 신설

경상남도 | 보건행정과(☎055-211-4934)

2024년 1월부터 경남 동부권에서도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을 운영하여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기존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은 동중부권, 서부권 2개소에서만 운영되어 동부권에서의 정신응급 개입 수요 대처에 어려움
- 동부권에도 1개소 신설 운영으로 현장대응 지원 강화

주요내용

종 전	개 선
2개 지역 3개 팀 운영 동중부권(창원), 서부권(진주)	3개 지역 3개 팀 운영 동부권(김해), 중부권(창원), 서부권(진주)

Ⅱ 정신응급 위기개입팀 역할 Ⅱ

- ▶ 정신응급상황에서 112(경찰)-119(소방)-위기개입팀 간 SOS 핫라인 구축
- ▶ 24시간 365일 정신건강 위기상담을 통한 위기개입 및 응급출동 등

【 권역별 위기개입팀 설치지역/ 관할지역 】

- ▶ 동부권: 김해 / 김해, 밀양, 양산
- ▶ 중부권: 창원 / 창원, 의령, 함안, 창녕, 고성
- ▶ 서부권: 진주 / 진주,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시행일

2024년 1월

식품업계 종사자 건강진단 제도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경상남도	식품의약과(☎055-211-5025)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검사항목·기간 등을 개정합니다.

추진배경

-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

주요내용

① 식품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변경

기 존	개 정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제2급 감염병)

② 건강진단의 검사 유예기간 신설

구분	기 존	개 정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1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가능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③ 지자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2024.11.23.~ 시행예정)

* 기존 건강진단 수수료 3,000원

시행일

2024년 1월 8일

참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비대면 진료사업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8)
경상남도	식품의약과(☎055-211-5044)

- ①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 및 초진 허용, 진료지역 확대(의료취약지)
- ②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확대 및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 ③ 처방불가 품목 확대 및 처방전 위·변조 방지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23.12.1.)에 따라 비대면 진료 확대 시행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보 완
대상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자) 1년 이내, ▶ (그 외) 30일 이내 *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환별 구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면진료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일부 도서벽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일부 도서벽지 지역 ▶ 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창원·진주·김해·양산 제외 14개 시군)
진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 18세 미만 소아 진료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전국민 비대면 진료 및 처방가능 (휴일·야간에 한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진료 요구권에 대한 근거 불명확 ▶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처방 불가 ▶ 환자가 처방전 원본 다운로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진료 거부 근거 명확 ▶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사후 피임약 처방불가 ▶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환자가 처방전 다운로드 불가)

* (진료시간) 연중(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행일 2023년 12월 15일

참고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5-2551)
경상남도	식품의약과(☎055-211-5092)

도내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해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응급의료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추진배경

- 민선8기 도정과제(공약) 응급의료컨트롤타워 구축사업으로 지정
-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적기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컨트롤타워의 실질적인 역할 필요

주요내용

종 전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지원단 설립 ▶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정책 수립 ▶ 응급의료기관 협력·연계 추진 ▶ 병원 불수용 사례관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환자 발생 시 실시간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지원단-소방 협업 상황실 운영 ▶ 응급의료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한 지속적 사업추진
<p>응급의료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p>	<p>응급환자 신속이송, 적기치료로 골든타임 확보</p>

【 응급의료상황실 개요 】
○ (설치장소) 도청(신관 3층)
○ (구성조직) 4팀12명[응급의료지원단 8, 소방인력 4]
○ (주요역할) 상황실을 통해 불수용·이송지연 되는 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 및 응급의료기관간 응급환자 전원 조정 등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참고 |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 여성/가족/보육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확대

경상남도 여성정책과(☎055-211-5234)

도내 청년 여성(만 39세 이하) 채용기업 및 단체에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청년여성 대상 직무능력 향상 지원 및 일경험 기회 제공

주요내용

- 도내 청년여성 고용기업 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

기 존	확 대
도내 5개 지역 (창원·진주·김해·거제·양산)	사업시행지역 확대(7개) (창원·진주·김해·거제·양산· <u>의령·합천</u>)

【 사업개요 】

- ① (지원대상) '24.1.1. 기준 도내 만 39세 이하의 청년여성을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 ② (지원내용) 인건비(10% 기업부담), 교통비, 직무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자격증 취득, 구직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③ (지원규모) 도내 20명, 24년도 내 6개월 간 지원
 - 창원7, 진주2, 김해4, 거제3, 양산2, 의령1, 합천1 → 시군별 사업수요조사 반영
 - 지원금액 : 1인 기준 (전일제)월 191만원, (시간제)월 93만원, (교통비)월 10만원
- ④ (신청문의) 각 시군 여성일자리 부서
 - (창원) 여성가족과 225-3964, (진주) 능력개발관 749-6887
 - (김해) 여성가족과 330-3314, (거제) 가족정책과 639-4943
 - (양산) 여성청소년과 392-3284, (의령) 주민생활지원과 570-2252, (합천) 930-3267

시행일

2024년 1월 ~

| 참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 제14조 등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경상남도 가족지원과(☎055-211-5256)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양육비 등의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주요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범위 확대

구분	기존	개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만 18세 미만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고등 3학년 12월까지 지원

【사업개요】

- ①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②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등 3학년에 다니는 해까지 월 21만원
 - ▶ 아동양육비 추가지원(월 5~10만원)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만원/년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가구당 월 5만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경상남도 가족지원과(☎055-211-5256)

24년부터 청소년한부모 자녀 0~1세 아동에게 아동양육비를 월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 상대적 빈곤 및 자녀양육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 지원

주요내용

기 존	개 선
(0~1세) 35만 원	(인상) (0~1세) 40만 원
(2세 이상) 35만 원	좌 동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 ①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 ②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방법
아동양육비	월별	(0~1세)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5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계좌입금
검정고시 학습비	수시 (신청시)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 용품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
자립활동 촉진수당	월별	월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계좌입금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참고 |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경상남도

가족지원과(☎055-211-525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합니다.

추진배경

-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 도모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수당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녀 1인당 월 25만원

【 사업개요 】

- ①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
※ 청소년부모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
- ② (지원제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③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참고 | 「청소년복지지원법」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경상남도 | 가족지원과(☎055-211-5263)

출생아동에게 일괄 200만원씩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이 '24년부터는 둘째아부터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추진배경

- 생애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지역 등에 상관 없이 사회·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 확대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출생아당 200만원 지급	첫째 200만원 지급 둘째부터 300만원 지급

【 첫만남이용권 사업 】

- ①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신고 된 영유아
- ② (사업내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 이용권 지원
- ③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등
- ④ (사용기간) 바우처 지급일(결정 통지)로부터 1년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경상남도 가족지원과 ☎055-211-5264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일부를 지원하여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주요내용 '24년 신규사업

-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을 원하는 임신·출산 희망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백만원 지원, 부부당 2회까지)
- 시행주체 : 전 시군

※ 추후 세부 지원범위 등 안내예정(보건복지부)

시행일

2024년 4월(예정)

참고 「모자보건법」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소득기준 폐지)

경상남도 가족지원과(☎055-211-526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없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19종 질환)받은 임산부
- ▶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19종 질환)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에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지원(300만원 한도)
- ▶ (시행주체) 도내 전 시군
- ▶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신청
- ※ 추후 세부사항 안내예정(보건복지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모자보건법」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지원기한 확대]

경상남도 | 가족지원과(☎055-211-526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을 확대합니다.

추진배경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폐지
지원기간	1년 4개월	2년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 ▶ (지원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 (지원내용) 미숙아(체중별 의료비 차등 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미숙아(최대 10백만원) 및 선천성 이상아(최대 5백만원) 치료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 (시행주체) 도내 전 시군
- ※ 추후 세부사항 안내예정(보건복지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모자보건법」

선천시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소득기준 폐지)

경상남도 가족지원과(☎055-211-5264)

'24.1.1.부터 선천시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추진배경

-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통해 언어지능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폐지

【 미숙아 및 선천시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 ▶ (지원대상) 영아 및 영유아
- ▶ (지원내용) 신생아에게 선천시 난청검사를 실시하여 난청 여부 선별,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양측)
- ▶ (시행주체) 도내 전 시군

※ 추후 세부사항 안내예정(보건복지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모자보건법」

임신 준비중 부부 필수가임력 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 가족지원과(☎055-211-5265)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필수가임력 (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임신 및 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주요내용 '24년 신규사업

① 지원대상 검사

- ▶ (여성) 여성 10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 (남성) 남성 5만원/ 정액검사

※ (난소기능검사, AMH) 난소 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여성생식기 초음파)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정자의 활동성, 정자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② 지원대상 지역

- ▶ 도내 통영/김해/밀양/산청 거주 중인 임신준비 중 부부
- ▶ '24년 4개 지역 시범운영 후 '25년 이후 순차적 확대 예정

③ 이용방법

-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 → 각 보건소 협약의료기관 통한 필수 검사 후 비용신청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0-3561)
경상남도	가족지원과(☎055-211-5275)

출산 및 양육 초기 손실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0~1세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 영아양육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부모급여 지원사업 ||

- ▶ (지원대상) 0~1세(24개월 미만)
- ▶ (지원금액)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개월수 기준으로 지급)
- ▶ (지급방식)

	0세	1세
어린이집 이용 O	100만원 부모통장 입금	50만원 부모통장 입금
어린이집 이용 X	보육료(540천원) 선지급 차액분(460천원) 부모통장 입금	보육료(475천원) 선지급 차액분(25천원) 부모통장 입금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아동수당법」

만4~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경상남도 가족지원과(☎055-211-5275)

부모부담 경비인 어린이집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만 4~5세 아동에게 지원하여 무상보육을 실현합니다.

추진배경

-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 추진에 따른 유치원 쏠림현상 예방 및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동등한 지원 보장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어린이집 이용 만5세아	어린이집 이용 만4~5세아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

- ▶ 필요경비 항목에 대한 부모동의서, 운영계획서, 실제 운영 사진 및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
-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4~5세아반
- ▶ (지원금액) 최대 146천원(수납한도액 내 실제 부담한 금액만큼 지원)
- ▶ (지원항목)

(단위 : 천원)

구분	필요경비(연간)				
	행사비	현장학습비	시도특성화비	차량비	특별활동비
국공립	연 100	분기당 40	월 30	월 30	월 60
민간, 가정			월 37		
기타(법인,협동 등)			월 30		

- ▶ (지원제외) 입학준비금, 아침/저녁 급식비 제외
- ※ 경상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책정(매년 1월 말, 3월부터 적용)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영유아보육법」, 「경상남도 보육 조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사업 확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74)
경상남도	가족지원과(☎055-211-5283)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다문화 학생 증가로 학령기 다문화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 필요

주요내용

- 다문화가정 내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하여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초등 고학년 국어 및 독서토론 등 지원)

구 분	종 전	개 정
지원대상	취학 전후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	(확대) 취학 전 (초등학교 모든 학년)
초등저학년	도내 8개소 창원(2), 김해(2), 그 외 통영, 양산, 의령, 함안 각 1개소	(확대) 도내 13개소 기존 지역 + 창원(마산), 밀양, 함안, 남해, 거창 각 1개소
	개소당 52,600천원(년)	개소당 42,600천원(년, 9개월)
초등고학년	도내 지원X	(신규) 도내 5개소
	-	개소당 42,600천원(년, 9개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다문화가족지원법」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 주거/교통/안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044-202-8991)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055-211-2764)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 등 규정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 예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단,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포함한 모든 공사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단,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 경영 해책임자 등에게 유해·위험 방지 의무 규정
 - 사업주·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유해·위험 방지 의무 명시하고, 임대·용역·도급 등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 공용이용시설 등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조치 의무 규정
 - 원료나 제조물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명시
- 중대재해 발생 시 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경영책임자 등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해당 법인 등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24년 1월 27일

참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9)
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315)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 대상범위를 확대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대상 임차료 및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사업

추진배경

-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 2024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주요내용

- 주거급여 대상자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지급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지급

【 주거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3년) 중위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4년) 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주거급여법」 제5조,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
찾아가는 주거급여 손길
반겨주는 주거행복 마음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LH주거급여 담당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나, 상담 시 담당자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거급여 부정수급 처벌 및 신고 안내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24조)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계산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가 확인 된 경우 수급을 중지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8조)

신고처 |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사·군·구 주거급여 사업팀

주거급여
문의

전·월세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자가주택 수선 지원



1600-0777

지원여부
자가인quiry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수선유지급여 신청·신청서 작성·평가 및 선정 안내

• 문의처 | 1600-0777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지원내용

주택노후도(경/중/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

•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기초 및 지하철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설비상태	부역,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small>* 수선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가능</small>		

지원절차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공사 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맞춤형 집수리를 통해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약자 및 장애취약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 주거약자 및 장애취약가구 추가 지원

구분	장애인	고령자	침수방지
대상자	시각, 청각, 지체, 기타 장애인 등	만65세 이상인 고령	재해취약주택 거주가구
지원범위	최대 380만 원 추가지원	최대 50만 원 추가지원	차수판(천판형, 침문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설치항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수선유지급여 신청·신청서 작성·평가 및 선정 안내

• 문의처 | 1600-0777

2024. 1



**주거
급여**

주거비 지원부터
낡은 집 수선까지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사업개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월세를 지원

↳ (2023년) 47% → (2024년) 48%



지원대상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지원내용

대상	내용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 임대료 (2024년)						
	(단위: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강원,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주거급여 지급 절차



↳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신청 방법	방 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타넷 복지로 www.bokjiro.go.kr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
별도 지급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 불인정

지원내용 및 절차

주거급여 사업개요 내용과 동일

Q & A



Q.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정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일을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방 문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타넷 복지로 www.bokjiro.go.kr
----------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란?
폭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 폭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음악,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 범죄·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미혼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거주자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2023년 기준)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
| 2,347,719원 | 3,003,226원 | 3,359,099원 이하 |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2023년 기준)
- | 총자산 | 자동차(지령가액) |
|------------|-----------|
| 2억 5,500만원 | 3,683만원 |

지원주택

- 매입임대: LH가 도심지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전세임대: 입주대상이자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건설임대: LH가 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

이주비용 지원



이주비용 신청방법	보증금 대출 기금수탁은행 대출신청
	이사비 지원 주민센터 신청

주거급여,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 임차급여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근거로 거주지역,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Q. 주택조사를 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입니다.

Q. 주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현장 방문조사는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주셔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수급자로 선정시 2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가 확인된 경우 수급이 중지됩니다.

Q. 주거급여 수급 후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받은 주거급여 수급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임차료가 연체되는 경우 주거급여 중지의 사유가 됩니다.

Q.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이고, 거주지 변경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을 하고, 이사를 가실 경우 반드시 해당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자가가구 수급자로 선정되면 조사받은 해당년도에 보수공사가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당해연도 신규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에 주거급여 수급 확정 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경상남도 | 건축주택과(☎055-211-4316)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여 경상남도 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하여 정상거처 이전을 지원

이사비 지원 그간 경위

- (국정과제)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 '22.8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이주비 지원 내용 포함)
- '24년 예산 : 국비 30억 반영(1.5만호, 호당 이사비 40만원, 지자체 매칭 50%)

주요내용

- 지원대상
 - ▶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 (민간임대) 쪽방, 반지하 등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로 민간주택 이주심사를 통과한 자
- 지원내용 : 이주비(이사비·생필품 등)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방식 : 이주한 공공·민간임대 주소 기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및 지급(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시행일

2023년 2월

참고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붙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절차

	단 계	주요내용			
주거상향 과정	이사비 지원 안내 (공공주택사업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 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상향지원 선정 시 이사비용 지원사업 안내 <민간임대 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시 안내문 배포 등 			
	이주 대상자 선정.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임대 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매입·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선정 및 계약 ※ 공공임대사업자는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발급 <민간임대 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상향 무이자 보증금 대출(HUG) 심사 통과 ※ 각 은행은 대출거래 약정서 발급 			
이사비 지원 과정	신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비 지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제출(필수서류 및 증빙서류 등 제출) 			
	신청서 접수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신청 안내(읍·면·동 주민센터 등) ▶ 구비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구비서류 누락 및 부적정한 경우 보완 처리) 			
	접수.조사 (읍·면·동)	접수 즉시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검증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접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 처리 - 이주확인 제출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 공공임대 : 임대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민간임대 :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검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최종 확인 - 서류의 대상자 일치 여부, 계약(공공임대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전입신고 확인(주민등록등본) 등 </td> </tr> </table>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 처리 - 이주확인 제출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 공공임대 : 임대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민간임대 :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검증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접수 처리 - 이주확인 제출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 공공임대 : 임대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민간임대 : 대출거래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최종 확인 - 서류의 대상자 일치 여부, 계약(공공임대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전입신고 확인(주민등록등본) 등 				
지원 결정 (시·군)	제출서류 등 바탕으로 지원 여부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접수 후 7일 이내) ▶ 지급(접수 후 14일 이내) ▶ 이의신청 관련 안내 ※ 이의신청 : 결정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안내

경남개발공사	GN-home센터(☎055-269-8322)
경상남도	건축주택과(☎055-211-4354)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거문화를 구현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배경

-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주민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 전자문서 전환 및 공개를 통한 업무 간소화 도모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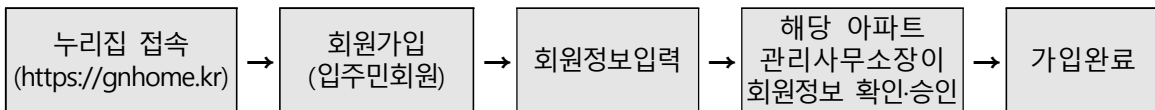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 이력정보, 전자문서 정보 등 산재된 아파트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검색하는 통합정보시스템(<https://gnhome.kr>)

주요내용

-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을 통한 문서공개, 관리비 및 유지관리 이력 정보 제공
-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요상황 전파, 공동주택정보 및 민원 접수 기능 제공

가입절차

- 아파트 입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시행일

2023년 9월 1일~

| 참고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안내

GN-home 우리 아파트의 모든 정보를 한곳에!!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GN-home)이란?

아파트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 이력 정보, 전자문서 정보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아파트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검색하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도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합니다.**

<https://gnhome.kr>

네이버 검색창에 **N 경상남도 통합운영체제** 를 검색해보세요

플랫폼 주요기능

- ▶ 거주하시는 아파트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공개, 관리비공개, 유지관리 이력 제공,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 입찰 및 계약정보, 아파트 시세, 주변상권 정보 등 조회
- ▶ 거주하시는 아파트 내 전자이사결정, 재난 등 주요상황 전파, 인터넷 민원 접수
 - ▶ 아파트 동별 게시판이나 관리사무소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아파트 모든 정보**를 GN-home 시스템에서 **쉽고 간편하게 조회·검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조회·검색 가능합니다.)

플랫폼 가입절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입주민 회원가입 (아파트 입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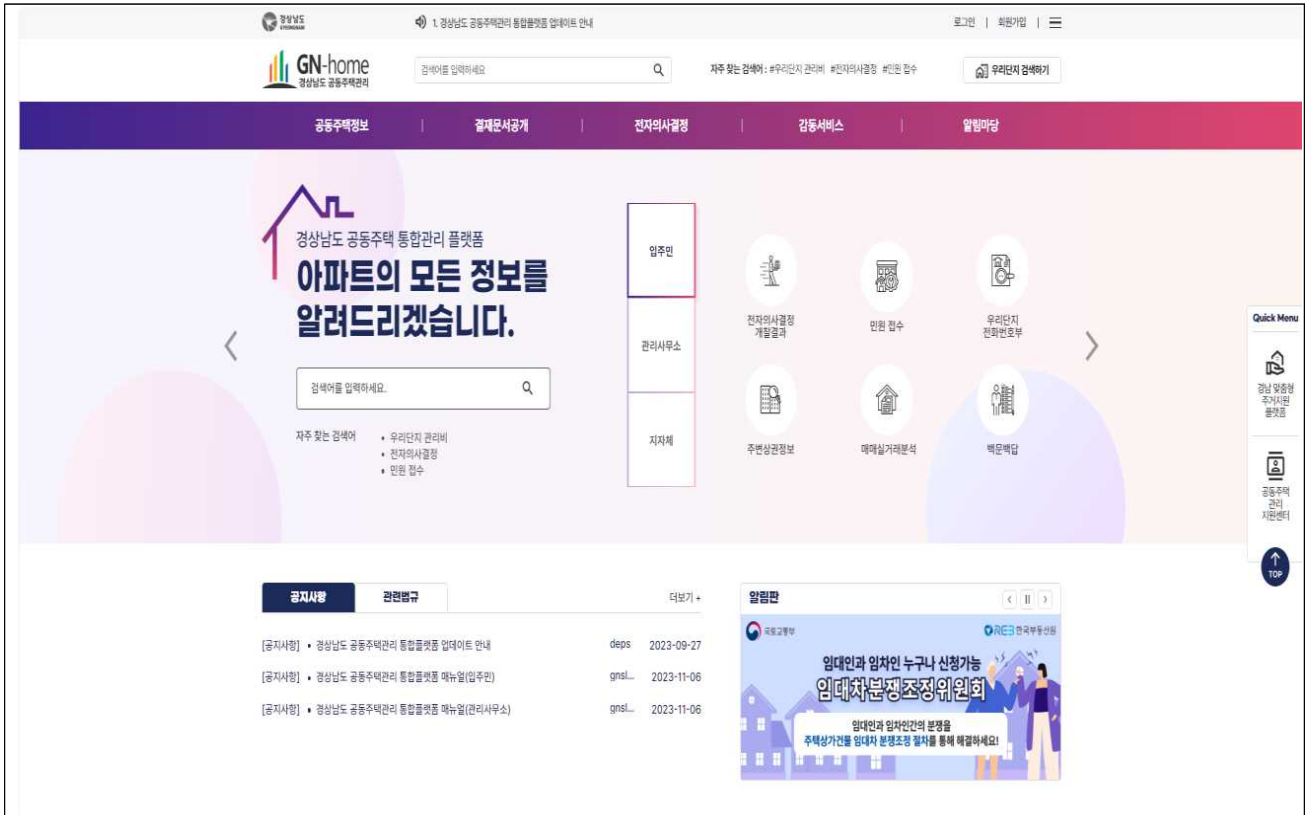
※ 가입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GN-home 시스템 알림마당(공지사항)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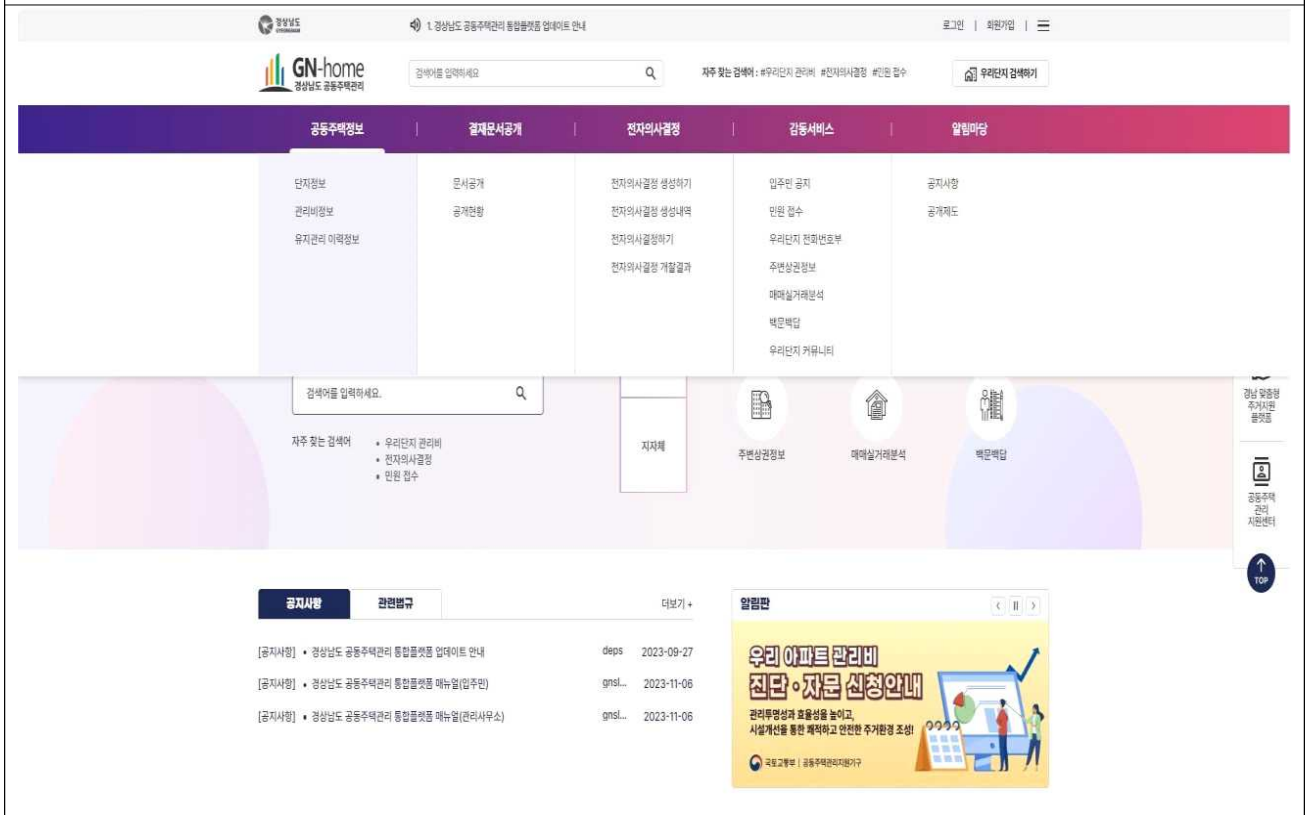


시스템문의 | 경남개발공사 GN-home 센터 (☎ 055-269-8322)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055-211-4354)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웹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웹페이지 주요기능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2)
경상남도	교통정책과(☎055-211-4135)

'24.5월부터 교통비의 약 20%를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교통비의 53%까지 지원하는 K-패스 사업으로 확대전환됩니다.

*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 및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여 이동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추진배경

- 도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4.7월부터 시행

주요내용

※ 전국에서 이용 가능(시내버스, 지하철)

구분	(종전)알뜰교통카드	(변경)K-패스
사업기간	2020년~2024년 4월	2024년 5월~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도민(주민등록상)	동일
지원조건	월 최소 15회 이상 ~ 60회 이하	동일
지원금액	교통요금별 적립액* x 이용횟수 * 일반, 청년, 저소득별 상이,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	월 교통비 x 정률* *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3%
이용방법	① 알뜰교통카드 발급(alcards.kr) ②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③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 이용 시 알뜰교통카드로 결제 ④ 이동거리에 따른 교통비 환급액 산정 ⑤ 다음달 교통비 카드대금 청구 시 적립된 마일리지 자동 차감 청구	① K-패스 카드 발급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기존카드 사용가능 ②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 이용 시 K-패스 카드로 결제 ③ 다음달 교통비 카드대금 청구 시 환급액 자동 차감하여 청구

※ (발급카드사) 농협, 신한, 삼성, 현대, 국민, 우리, 하나, BC(IBK·케이뱅크·광주), 티머니, 캐시비, DGB

※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행일

용 2024년 5월 1일(예정)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경상남도 | 청년정책과(☎055-211-5083)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교통비 부담 급증
 - * 시내버스요금 50% 상승 : 청소년 1,000원 → 청년(일반) 1,500원
- 대중교통비는 경직성 경비로 청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필요

주요내용

구분	사업개요
신청대상	19~24세, 경남 거주(주민등록 기준) 청년
지원기간	2024. 1 ~ 6월
지원규모	경남 대중교통* 이용자 5만명(추정)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지하철, 경전철
지원내용	최대 6만원(교통카드 실사용액 기준)
예산규모	28억원(도비 14, 시군비 14) * 교통카드 수수료 등 운영비 3억 별도
지원체계	행정기관 방문없이 기 구축된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바로서비스 누리집 https://baro.gyeongnam.go.kr/

시행일

2024년 상반기

참고 |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종료 및 폐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044-201-4596)
경상남도	건설지원과(☎055-211-2915)

2023.12.31. 일자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종료 및 폐지

추진배경

- 업역폐지 시행('21년)으로 인해 업종유지의 실익이 없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주요내용

- '23.12.31. 일자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 ▶ '22년부터 '23년 말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6개 중 3개 선택 또는 종합건설(건축, 토목, 토목건축) 1개 업종으로 자율전환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안전점검 대행 가능

【전문건설 대업종(6종)】

-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실내건축공사업, ③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④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⑤철근·콘크리트 공사업, ⑥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종 전	개 정
시설물유지관리업	('22년~'23년말) 전문건설대업종 또는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1328호)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
경상남도	예방안전과(☎055-211-5415)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을 통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 강화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택의 구조특성,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선
옥내소화전설비	호스 방식	호스릴 방식
스프링클러 헤드 수평거리	3.2m	2.6m
자동화재 탐지설비	열·연기감지기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유도등	소형유도등	중형유도등 <small>주차장</small> 대형유도등 <small>대피공간</small> 있는 옥상출입문
비상조명등	기준없음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 1개 이상 설치 <small>기준신설</small>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
경상남도	예방안전과(☎055-211-5415)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을 통한 대형화재 예방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20.7.21.)를 계기로 대공간·높은 층고 등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선
옥내소화전 저수량	5.2톤	10.4톤
스프링클러설비	▶ 저수량 32톤 ▶ 일반헤드(80L/분)	▶ 저수량 96톤 ▶ 라지드롭형헤드(160L/분)
비상방송설비	▶ 음향출력: 1W ▶ 비상전원: 10분 이상	▶ 음향출력: 3W ▶ 비상전원: 30분 이상
유도등	소형유도등	대형유도등
피난유도선	기준없음	(신설) 연면적 15,000㎡이상 창고시설 지하층 및 무창층에 설치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 변경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4)
경상남도	예방안전과(☎055-211-5426)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이 준수해야 하는 배치기준 (점검단위, 점검한도면적)이 강화됩니다.

변경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부칙(2022. 12. 1. 전부개정) 제4조에 따른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강화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선
점검 단위 (1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업자(관리사 1, 보조인력 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관리사 또는 기술사 1, 보조인력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업자(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 보조인력 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관리사 또는 기술사 1, 보조인력 2)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점검 한도 면적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동점검: 12,000㎡ / 아파트 350세대 ▶ 종합점검: 10,000㎡ / 아파트 350세대 ▶ 점검인력 1명 추가 시 점검한도 증가 면적 (종합점검) 3,000㎡ / 아파트 70세대, (작동점검) 3,500㎡ / 아파트 90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동점검: 10,000㎡ / 아파트 250세대 ▶ 종합점검: 8,000㎡ / 아파트 250세대 ▶ 점검인력 1명 추가 시 점검한도 증가 면적 (종합점검) 2,000㎡ / 아파트 60세대 (작동점검) 2,500㎡ / 아파트 60세대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참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위험물 예방규정계획서 이행실태 평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2)
경상남도	예방안전과(☎055-211-5424)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예방규정 이행 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하게 됩니다.

개정이유

- 대량 석유 저장시설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종 전	신 설
기준없음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시설

【 소방청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

▮ (평가주기) 4년,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 차등적용 재평가(24.3월 평가세부내용 안내) ▮

환산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70점 미만
평가등급	안전 1등급	안전 2등급	안전 3등급	안전 4등급
정기평가	4년 이내	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시행일

2024년 7월 4일

참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제4항

대형공사장 합동현장자문단 운영

경상남도 예방안전과(☎055-211-5413)

대형공사장의 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지원 및 유관기관 합동 현장자문단 운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건설현장 공사 마무리 단계 화재발생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반복
- 떨어짐, 부딪힘 등 안전조치 의무 미준수에 의한 안전사고 지속 발생

주요내용 '24년 신규

종 전	신 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시 화재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 소방서장 주관 현장 화재안전지도 ▶ 유관기관 합동현장자문단 운영(위험요인 사전제거)

1. 업무협약

교육기관: 한국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 안전보건공단



2. 교육지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소방안전교육 지원



3. 착공신고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안전다짐 동영상 제작·활용



4. 공사 중



소방서장 현장컨설팅, 일일작업 현황판 설치
화재안전 긴급 알리기 "불이야!" 운영

5. 공정률 80% 이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중대재해예방, 유관기관 합동현장자문단 운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사전안내 서비스 개선

경상남도 | 예방안전과(☎055-211-5426)

소방대상물 자체점검제도 인식제고와 의무이행을 위한 사전안내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추진배경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및 위험물시설 정기점검의 사전안내 서비스 개선으로 자기주도 예방체계 확립과 도민편의 증진·불이익 최소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전안내기준 미비	→ 자체점검 기준일 60일전부터 단계적 사전안내로 관계인 인식 제고

【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전안내 】

- ① 우편안내**
 - 건축물 사용승인일 및 위험물 완공검사일 60일전 e-그린우편 안내문 발송
 - (최초점검) 건축물 사용승인일 10일 이내
- ② 문자발송**
 - 건축물 사용승인일 및 위험물 완공검사일 30일전 1차, 15일전 2차 알림톡 이용 안내 문자 발송

안내 대상	1차 안내	2차 안내	3차 안내
· 소방대상물 24,692개소	· 60일 전 e-그린우편 	· 30일 전 알림톡 	· 15일 전 알림톡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소방시설법」 제22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벌집 제거 사전신고제 운영

소방본부 | 방호구조과(☎055-211-5393)

특정시기(6~9월)에 집중되는 벌집을 사전제거하여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합니다.

추진배경

- 여름 및 가을철 벌초, 성묘, 산행으로 인한 벌 쏘임 사고 급증

주요내용

-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홍보 등으로 마을단위 벌집제거 시행
- 벌집을 짓는 초기 6~7월에 사전제거 → 벌 개체 수 증가 예방

3~5월 【사전제거 신고제 홍보】	6~7월 【마을단위 벌집제거】	10~11월 【효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보도, 이장단회의· 의소대 회의 및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장, 의소대 신고· 벌 개체 수 증가 전 마을단위 벌집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벌쏘임 사고 분석· 월별 벌집 제거 분석· 대원피로도 등 설문

(참고) 도내 벌쏘임사고 발생 현황

① 벌집제거 건수(단위: 건수)

	'23.6월	'23.7월	'23.8월	'23.9월
2023	1,186	2,573	4,244	2,592
2022	816	5,549	6,992	3,129

② 벌 쏘임 사고 건수(단위: 건수)

	'23.6월	'23.7월	'23.8월	'23.9월
2023	36	96	125	221
2022	72	223	373	177

7~9월 벌집 및 벌 개체수 증가 → 벌집제거 신고 증가

시행일

2024년 3월 1일

참고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 농림/축산/수산

경남 청년농업인 연령 '45세→50세 미만' 확대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33)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 연령이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 청년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 및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청년농업인 인정 범위 확대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지원연령	18세 이상~45세 미만	18세 이상~50세 미만

【 경남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

-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 40~50세 미만 청년농업인, 1인당 월 1백만원 지원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 : 청년농업인 채용 농업법인 등에 인건비 지원
-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 :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 시 임대료 50~80% 지원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창농(창업) 아이디어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지원

경상남도 | 친환경농업과(☎055-211-6354)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진배경

- 농업인 주도형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추진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작목의 전략적 육성

주요내용

- 대규모 단지조성을 위한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 지역특화작물을 재배(또는 예정)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등
- (추진방식) 시군 공모선정 ▶ 1시군 1개소(품목) ▶ 5개소 내외 선정

① 생산기반시설

- ▶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치·개보수, 환경관리시설, 지주시설, 다겹보온 커튼 등, 품종갱신 등을 위한 묘목·종자대 및 자재비

② 유통·소규모 가공시설(총 사업비의 20% 이내)

- ▶ 선별장,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소규모 가공시설 등

③ 시설설치·경영 등 컨설팅(총 사업비의 5% 이내)

④ 기타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등

(지원제외)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소모성 자재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9조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시설원에 토양개량제(바이오차) 지원

경상남도 | 친환경농업과(☎055-211-6355)

바이오-차 지원으로 시설원에 농가의 연작장애 해소 및 시설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연작장애 해소와 토질개선을 위해 토양개량제(바이오차)를 지원하여 시설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 바이오-차 || 유기물과 숯의 중간 성질을 띠며 탄소를 흡착할 수 있는 고효율의 소재로서, 바이오매스(목재, 쌀겨 등)를 300°C~500°C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분해하여 탄화시킨 고체 물질(숯).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현저히 적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최적의 소재

주요내용

- 탄소저감 농법 실현 및 토양개량을 위한 바이오차 구입 지원 (2024. 2월 중 신청)

【 시설원에 토양개량제(바이오-차) 지원사업 】

- ① 지원대상 : 도내 시설원에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 ② 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자부담 100)
- ③ 지원규모 : 약58.8ha
(10a당 10kg×20포 필요, 지원단가 17,000원(10kg), 최대200포(1ha)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9)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2023. 4. 27.부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맹견사육이 등록제에서 허가제(허가, 기질평가, 관리항목)로 변경됩니다.

추진배경

- 개물림 사고 증가에 따른 국민 및 반려견 안전을 위해 맹견에 대한 허가제를 신설함으로써 맹견소유자와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맹견(반려동물) 등록제	맹견 허가제
맹견 출입금지(3종)	출입금지 추가(7종)
-	맹견 기질평가(의무) 신설
관리항목(의무보험)	추가(교육, 중성화수술, 결격사유 등)

【 맹견의 정의(동물보호법) 】

- ①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②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시행일

2024년 4월 27일

참고 | 동물보호법 제2절(제17조~제29조) 맹견의 관리 등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4)

사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동물사료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2023.12.28./2024.4.25.)

추진배경

-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동물사료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동물 사육 현장 등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

주요내용

① 처벌규정 강화로 사료제조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 ▶ (과태료) 제조업 승계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규정 신설
- ▶ (과징금) 사료관리법 상 과징금 하한선 상승(50만원→150만원)
- ▶ (벌금 또는 징역)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유통기한 경과한 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신설

② (신설) HACCP 교육훈련 의무화

- ▶ 신규/정기훈련 매년 1회 이상 의무 실시

③ 표시사항 준수 의무 대상자 추가

- ▶ (종전) 제조업자/수입업자 → (변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2024년 4월 25일

참고 | 사료관리법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경상남도 | 해양항만과(☎055-211-3954)

도내 섬 주민이 육지 이동 시 여객선 이용요금 지원이 확대되어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섬주민과 육지주민의 교통 운임 격차 완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
- 섬주민의 교통 이동권 보장 및 정주 여건 개선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여객선 운임 5,000원 초과분 지원 (정규운임 8,340원 이하 시 50% 지원)	여객선 및 도선 운임 1,000원 초과분 지원

【 사업개요 】

- 지원내용 : 기존 국고보조사업(여객선 운임 5,000원 초과분 지원)에서 대상 및 운임 추가 지원(여객선, 도선 운임 1,000원 초과분 지원)
- 지원대상 : 운임 1,000원 초과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섬 주민(51개 섬 6,913명)
* 1,000원 초과 여객선 및 도선 항로 : 28개 항로(여객선 11개항로, 도선 17개항로)
- 총사업비 : 연515백만원(운임지원 500, 시스템 운영 15)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시행일

2024년 3월(예정)

참고 |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지원조례 제4조

우수어촌계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044-200-5430)
경상남도	해양항만과(☎055-211-3916)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 및 신규인력 유치한 어촌계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 어촌계는 어족자원 감소,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
- 신규 어촌계원을 유치하여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촌소멸에 선제적 대응 필요

주요내용

- (사업대상)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로 신규계원 다수 유치한 어촌계
- (사업비) 1,000백만원/개소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사업내용) 지자체 및 지구별 수협을 통해 어촌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입하여 우수 어촌계에 제공

【추진일정】

(5~6월) 해양수산부 사업 공모 ▶ (6월) 사업계획서 접수(어촌계→지자체→해수부)
(7월) 우수어촌계 선정 ▶ (8~12월)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시행일

2024년 5월(예정)

참고 | 「수산업법」 제86조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15)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금액이 자부담 없이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 여성어업인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어업경영 의욕 고취 및 어촌 삶의 질 향상 도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20만원 (자부담 4만원)	20만원 (자부담 없음)

【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

- ▶ (지원대상) 만20세 이상 ~ 75세 미만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여성어업인
-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 인터넷 신청
- ▶ (지원방법) 여성어업인 바우처카드(수협) 지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사업신청은 시·군별 접수시기 상이함

참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055-211-4024)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굴 공급기반 확충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진배경

- 수산물 안전·위생문제 해결로 신선한 생굴 공급 및 한미 패류 위생 협정(미FDA 지정해역) 지속 유지를 통한 수출 확대

주요내용

- ('24~, 신규) 기존 굴 까기 작업장 철거 후 신축 또는 개보수 지원

【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사업 】

- ▶ (사업기간) 2024~ (신규)
- ▶ (사업비) 개소당 (신축) 600백만원, (개보수) 200백만원 이내 (자부담 40%)
- ▶ **(사업내용) 기존 굴 까기 작업장을 철거 후 신축 또는 개보수 지원**
 - ① 신축 : 식당·사무실은 전체 시설면적의 30% 이내로 구축
 - ② 개보수 : 총 사업비 중 건축 60% 이하, 기계장비 30% 이하, 식당·사무실 10% 이하 지원
- ▶ **(사업대상) 굴 까기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양식어업면허(굴)를 받아 운영 중인 어업인/수협/어촌계/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
 - ②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 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경남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추진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055-211-4025)

경남 가리비 양식 발전을 위한 가리비 양식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추진배경

- 최근 경남의 주력 양식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리비 양식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스마트·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 * (참고) 가리비 생산량 ('19) 5,082톤 → ('22) 7,129톤

주요내용

- ('24~, 신규) 가리비 양식 자동화시스템 구축 지원

【 경남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구축 추진 】

- ▶ (사업기간) 2024~ (신규)
- ▶ (사업량) 1대
- ▶ (사업비) 500백만원 이내(자부담 40% 이내)
- ▶ **(사업내용) 가리비 양식 자동화시스템 구축 지원**
 - ① 작업대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내구성이 높고 위생적인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부력재는 인증부표 품질 인증 받은 제품 사용
 - ② 가리비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장비(선별기, 크레인, 패각분쇄기, 채롱망 세척기, 위생처리 시스템 등) 및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 ▶ **(사업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패류양식 어업면허를 득한 어업인이 소속된 수협/어업인단체/영어조합법인 등**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양식산업발전법」,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어구 보증금제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관리과(☎044-200-5609)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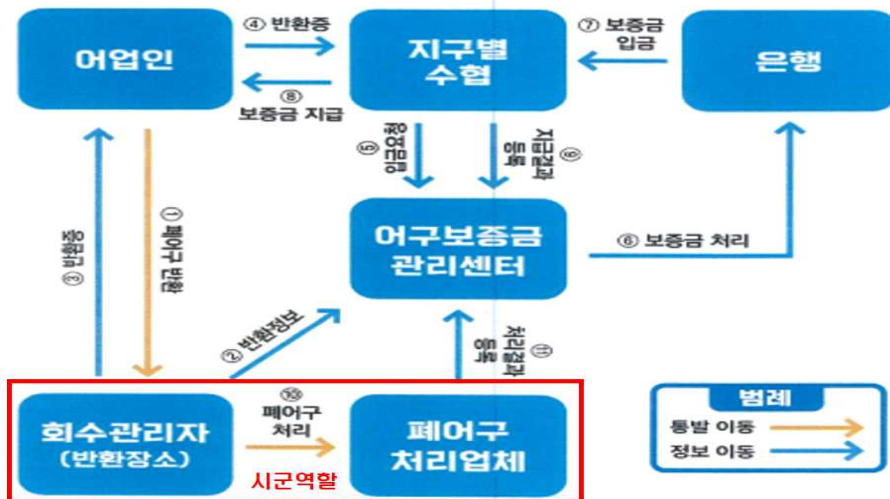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어구(보증금 부과 어구)를 지정된 반환 장소로 되가져오면 어구에 부과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추진배경

- 폐어구기인 해양플라스틱 대량발생 및 유령어업으로 인한 자원 피해
- 2023. 1. 수산업법 개정 시행을 통한 어구의 전주기관리 및 어구 보증금제도 근거 마련(수산업법 제81조~제84조)

주요내용

- 어구·부표('24.1.12. 통발어구부터 우선 적용) 반환 시 1,000~3,000원 반환
- * 이후 부표, 자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어구보증금 관리센터) 어구 출고량 및 보증금 입출금 관리
- (어업인 및 어구업체) 어구 구입 및 보증금 납부, 폐어구 반환



시행일 2024년 1월 12일

참고 「수산업법」 제81조~제84조(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 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소외도서 항로 운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243)
경상남도	어촌발전과(☎055-211-3263)

여객선, 도선이 다니지 않는 섬 지역에 감척어선 등을 활용하여 항로를 운영합니다.

추진배경

- 여객선 또는 도선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주요내용

- 운영항로 : (통영시) 오곡도~마동항, (고성군) 자란도~임포항
- 운항일정(예정)
 - (통영시) 오곡도~마동항 : 주 2회, 1일 2항차(오전, 오후)
 - (고성군) 자란도~임포항 : 주 3회, 1일 2항차(오전, 오후)
- 주민부담금 : 없음
- 시군담당부서
 - (통영시) 해양개발과 : ☎ 650-0812
 - (고성군) 해양수산물 : ☎ 670-4674

시행일

2024년 1월 1일(선박 수리(개조) 완료시기에 따라 시행일 변동가능)

참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경상남도	어촌발전과(☎055-211-3266)

섬 지역에서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운임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섬 지역은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을 지원하여 육지에 비해 높은 택배비를 부담하는 섬 주민들의 가계부담 해소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섬 지역 소재 사업체
- 지원내용 : 섬 지역 택배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운임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추가운임 지불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

※ (해양수산부) '24년도 세부지침 수립 중

시행일

2024년 1월 1일(사업지침 수립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제안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22.5.16.)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 문화/체육/환경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9)
경상남도	문화예술과(☎055-211-4528)

2024년부터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추진배경

- 도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공연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를 완화시켜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①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도서/음악/영화/공연), 국내여행, 체육활동(스포츠)을 지원하는 카드
- ② (사 용 처)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
- ③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누리집(www.mnuri.kr) 방문, 문화누리앱
※ 다음해에도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없이 지원금 자동충전

구 분	종 전	개 정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1인당 11만원/년	1인당 13만원/년

시행일

2024년 1월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경상남도 | 문화예술과(☎055-211-4533)

도내 문화콘텐츠 기업의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콘텐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을 제고합니다.

추진배경

- 문화콘텐츠 주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청년층의 관외유출을 방지하고, 도내 콘텐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신규(정규직)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구 분	종 전	개 정
지원대상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경남도 내 문화콘텐츠기업
지원규모	4~5개 기업, 1~2명	10개 기업, 1명
인건비	1인당 3개월	1인당 6개월
지원기간		

【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 ①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문화콘텐츠기업, 청년(만 39세 이하)
- ② (지원금액) 1인당 월165만원×6개월, 기업당 1명
※ 지원한도 : 채용인원 1인당 월 최저임금의 80%
- ③ (총사업비) 1억원(도비)

시행일

2024년 1월

참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제5조

문화콘텐츠 해외마켓 참가 지원

경상남도 | 문화예술과(☎055-211-4533)

해외 마케팅 활성화 및 수출판로 확대, 수요 맞춤형 해외 주요 마켓 참가 및 비즈매칭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콘텐츠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성화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수요맞춤형 해외 주요마켓 참가 및 비즈매칭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활동 지원

주요내용 '24년 신규사업

① 사업개요

- ▶ (지원규모) 도내 콘텐츠 중소기업 10~15개사
- ▶ (사업기간) 2024. 1~12월
- ▶ (총사업비) 1억원

② 도내 콘텐츠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를 통해 해외시장 조사 및 현지바이어 수출상담
- ▶ 통역, 전시부스 등 지원. 단, 참가기업의 항공권, 체제비 등은 자부담
- ▶ 수출상품 전시 및 기업홍보 활동, 부스참가 또는 비즈매칭(전시참관)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참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제5조

문화콘텐츠 분야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경상남도 | 문화예술과(☎055-211-4533)

도내 문화콘텐츠기업 수요기반 현장실습 연계 강화로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한 콘텐츠분야 우수인재를 육성합니다.

추진배경

- 산학연계 기반 ‘대학생 현장실습’ 중요성 대두,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의 개정으로 실습기관의 실습비 지급 의무화에 따라 지역차원의 현장실습 지원 필요

주요내용

- ① (사업기간) 2024. 1 ~ 12.
- ② (총사업비) 1억원(도비)
- ③ (주요내용) 도내 콘텐츠기업 대상 대학생 현장실습비 지원
 - ▶ 도내 대학-기업 간 현장실습 매칭지원을 통한 채용기회 창출
 - ▶ 대학/기업/학생 간 현장실습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 ▶ 졸업 직전 2학기 대학생에 대해 12주(23년제 8주) 이상 현장실습 운영 시 기업에게 현장실습비 직접 지원(최저임금 기준)
 - ▶ 기업당 최대 2명, 1인당 3개월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참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제5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044-203-3187)
경상남도 체육지원과(☎055-211-4715)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이 만5세~만69세로 확대되고,
1인당 지원금액이 월 1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추진배경

-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지원대상	만19~64세 일반 장애인	만5~69세 일반 장애인
지원금액	월 9만 5천원	월 11만원

※ 지원기간 변동없음(최대 12개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 만5~69세 장애인
- 사업내용 : 스포츠 수강료 1인당 월 11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사용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dvoucher.kspo.or.kr>)을 통한 이용권 신청 및 스포츠 강좌 선택·결제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044-203-3135)

경상남도 | 체육지원과(☎055-211-4724)

스포츠강좌 이용권 1인당 지원액이 월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추진배경

-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로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지원대상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포함)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제외)
지원금액	월 9만 5천원	월 10만원

※ 지원기간 변동없음(최대 12개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범죄피해가구의 5~18세 유·청소년(저소득층 장애인 제외)
- 사업내용 : 스포츠 수강료 1인당 월 10만원 연간 12개월 지원
- 사용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을 통한 이용권 신청 및 스포츠 강좌 선택.결제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국민체육진흥법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근무자 교육 강화

경상남도 | 환경정책과(☎055-211-6636)

동물원 내 동물복지 제고를 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추진배경

- 동물원 동물 질병·안전관리 강화 및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 환경 개선 등 동물 복지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동물원 등록제	동물원 허가제('23.12.14.~)* (신설) 사육환경 적정성 등 평가를 위한 전문관
-	(신설) 동물원 운영자·근무자 교육

* 기존 등록동물원의 경우, 5년 이내 허가요건을 득하여야 함. ('28.12.13.까지)

【 등록제 ▶ 허가제 세부변경기준 】

등록제	허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❶ 시설의 명세서, 내외부 사진 및 평면도❷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❸ 동물원 4대 관리운영 계획서<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 계획▶ 안전 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 생물 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❶ 보유동물 종별 서식 환경 기준❷ 동물원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❸ 보유동물 질병 관리 계획❹ 동물원 안전 관리 계획❺ 동물원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 계획❻ 그 밖에 보유동물 적정관리를 위한 필요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동물 복지증진계획서▶ (필요시)보유동물 활용 교육 계획서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참고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법 전면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7)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6646)

2024.1.1.부터 순환경제사회법의 시행으로 자원의 전 주기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전환의 필요성 대두
- 선형경제(생산→소비→폐기)에서 순환경제(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적 기반 조성

주요내용

①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제16조~제20조)

- ▶ 자원의 순환이용성 평가 실시 :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 전 과정에서의 순환이용가능성, 탄소배출 관련성 등을 평가

② 순환자원의 고시(제23조)

- ▶ 순환자원 인정방식을 신청→고시로 변경하여 순환자원의 범위 확대

③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제27조~제34조)

- ▶ 30일 내 규제 신속 확인 및 2개 이상 허가 등의 일괄처리 등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신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참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강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78)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6647)

2024.3.15.부터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추진배경

- 산단 및 공장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세부기준 부재로 자발적 이행실적 미흡

주요내용

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신설

- ▶ 설치의무자는 산단/공장 준공 후 3년 이내 직접 설치하거나 부지분양을 완료하고, 부지를 분양받은 자는 3년 이내 설치

② 지자체 분양대행 규정 신설

- ▶ 3년 이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부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설치의무자는 지자체에게 부지분양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③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규정 신설

- ▶ (시정명령) 기한 내 의무 미이행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처리시설 설치 또는 부지 분양을 명령
- ▶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년 1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설치의무대상 】

- ① (산업단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이상
※ 조성완료 또는 조성중인 산단에도 적용
- ② (공장) 연간 폐기물 발생량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15만㎡이상
- ③ (설치할 시설) 10년 이상 매립할 매립시설 설치 시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참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대기 4·5종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1)
경상남도	기후대기과(☎055-211-6674)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합니다.

추진배경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대기 4·5종 사업장 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 전송 의무화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1~3종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 실시간 오염물질 농도 관리	좌 등 (신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원격점검 가능, 실시간 모니터링
4~5종 사업장	측정기기 부착없이 주로 방문점검	

【 시설규모별 부착·전송 시기 】

구 분	신규시설 (‘22.5.3.이후 가동)	기존시설 (‘22.5.2.이전 가동)
대기4종사업장	~’23.6.30.	~’25.6.30.
대기5종사업장	~’24.6.30.	

- ① 측정내용 : 전류계, 차압계, pH계, 온도계
- ② 설치지원 : 설치비용의 90% 지원(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지원 병행)

시행일

2024년 6월 30일

참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승인신청 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
경상남도	산림휴양과(☎055-211-6863)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신청 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기준과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준 완화

추진배경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487호, 2023. 6. 20. 공포)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승인신청 간소화

주요내용

- ①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신청 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기준 완화

종 전	개 정
신규면적 포함될 경우 제출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생략 가능

- ②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및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준 완화

종 전	개 정
국유림 대부 등을 받는 자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및 받으려는 자까지 승인신청 가능

시행일

2024년 1월

참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임업직불제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산림청	임업직불제팀(☎042-481-1239)
경상남도	산림휴양과(☎055-211-6873)

임업직불금 온라인신청으로 직불금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
하고 임업인 편의 제공

추진배경

- 임업직불제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임업인의 온라인 신청 등 편의를
제공하여 임업인 소득 안정 도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임업직불금 신청 시 방문신청 증빙자료 수기 제출	→ 임업직불금 온라인신청 사전자격검증을 거쳐 제출서류 간소화

※ 향후일정

(’23.12월) 시스템 구축 완료 ▶ (~’24.3월) 시범운영 ▶ (’24.4월~) 운영개시

시행일

2024년 4월